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189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년 5월 21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구성에 중소기업청장 소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포함(제66조의2 신설)

#### 3. 의견제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2014. 5.

중 소 기 업 청

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 042-481-3996, Fax : 042-472-3287)

대통령령 제            호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기금의 조성)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중소기업청장 소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를 재원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lt; 신설 &gt;</p>	<p>제66조(기금운용요강) (현행과 같음)</p> <p>제66조의2(기금의 조성)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중소기업청장 소관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말한다.</p>

끝.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생산기술국 생산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3996